

改正私立學校法, 무엇이 問題인가

申鉉直

(啓明大·法學科)

금번私立學校法의 改正趣旨가 ‘私學의 自律性’과 ‘敎員의 身分保障’의 強化라고는 하지만, 既存의 敎職員 任免權 등의 大學自治權을 法人으로 移轉한 것을 비롯하여 財團關係者의 權限 強化에 치우침으로써 도리어 ‘大學의 自律性’과 ‘敎授의 身分保障’을 심각하게 危脅하는 改惡이 되고 말았다.

1. 머리말

1988년부터 각종 교원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教育關係法의 改正要求는 무수한 개정 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정부 여당의 거부로 인하여 '89년 2월의 임시 국회 이후 1년 이상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중에서 사립학교법만이 3월 16일 제148회 임시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으로써 교육계 안팎에서 격렬한 반대에 봉착하였고 새로운 教育法 論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의 수 많은 개정 청원과 개정 운동을 거듭했던 당사자들은 물론 언론에서 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임시 국회의 마지막 날 전격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節次上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고, 개정 법률이 ‘私學의 自主性’이란 이름으로 私學財團의 權限을 強化함으로써 그에 따른 敎職員의 身分危脅과 ‘大學의 自律性’을 심

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內容上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정 법률의 內容上의 問題點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改正法律의 中心 內容은 그동안의 政府案이나 각 政黨案에는 없었던 내용들로서 사립대학 재단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韓國大學法人協議會’가 '88년 8월에 제안했던 내용들만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文公委員會의 代案’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私學財團의 權限을 強化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문공위원회는 대안의 提案理由에서 “私學에 대한 行政監督權을 축소하여 私學의 自律性을 높이고 私立學校敎員의 身分保障을 강화함으로써 敎職의 安定과 私學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 문공위원회의 계안 이유와 대학법인협의회 및 문교부의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개정 사립학교법

의 法理上의 問題點을 살펴 보자.

2. ‘私學의 自律性’의 意味

‘私學의 自律性’은 사립학교법 제1조의 ‘私學의 自主性’ 보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法律上의 私學의 自主性이 보장되는 데에는 根據가 있어야 하며, 법적 근거는 上位法인 憲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에서는 學問의 自由(제22조)와 教育을 받을 權利(제31조)가 基本的 人權으로서 明文化되어 있고, 이것은 國民의 教育에 관한 權利, 즉 教育基本權에서 도출된다. 이와 같은 國民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教育의 自由와 平等’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無償義務教育制와 教育自治制가 제도 보장으로서 요구된다. 公教育制度의 초기에는 前者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나, 그것이 일반화되고 난 후부터는 後者가 教育權의 實質的 保障이란 측면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상 ‘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의 保障’이라는 규정으로서 명시하고 있다(제31조 4항). 아울러 그러한 것들은 教育制度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教育制度는 法律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6항, 教育制度法律主義).

私學의 自主性은 教育의 自由로부터 파생되는 私學設置의 自由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人間個性의 多樣性을 전제로 하는 教育의 本質로부터 나오는 私學(教育)의 多樣性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특한 學風이나 建學精神 또는 價値觀, 教育學理論에 근거한 自主性이 公教育制度 하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私學의 自主性도 國民의 教育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限界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 ‘私學의 公共性’이 요구된다. 이는 헌법상의 ‘教育의 自主性’이 법률상의 ‘私學의 自主性’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는 ‘私學의 自主性의 確保와 公共性의 鼓揚’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制定目的은 물론 상위법인 헌법에 구속되며, 헌법이 보장하려는 國

民의 教育基本權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私學의 自主性을 보장하는 目的是 私立學校設置者의 財產權의 自由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寄附財產에 기초하여 學校에 대한 特權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私學의 自主性을 ‘私學財團의 自律性’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私學教育도 國民의 教育을 받을 權利를 보장하기 위한 公教育으로서의 性格을 갖는다는 점에서 私學財團의 權限濫用을 막기 위한 國家監督權이 인정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종래의 경험상 國家監督權은 濫用되기 쉽고 私學의 自律性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고, 그러한 점에서 國가감독권을 緩小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國家監督權의 緩小로 인하여 私學財團의 全權의 教育支配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國民의 교육을 받을 權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公共性은 침해되게 된다. 여기서 私學의 自主性을 보장하면 公共性이 침해되고, 國家監督權을 인정하면 自主性이 침해되는 矛盾이 발생한다. 우리의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矛盾의 惡循環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矛盾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學校自體가 公共性을擔保할 수 있는 内부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오늘날의 세계적인 교육 상황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大學自治’ 또는 ‘學校自治’의 保障이 그것이다. 여기서 ‘大學自治’라 함은 대학의 구성원에 의해 대학이 운영됨을 말하며, 教授會를 중심으로 하여 學生과 職員이 參與하는 방식으로 大學 스스로가 大學의人事權과 財政權을 행사하고 自治立法權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는 教育専門家로서 直接 教育을 擔當하는 자들 모두의 참여에 의해 學事運營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私學設置者가 教育専門家라 할지라도 學問領域의 差別性과 多樣性으로 인하여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誤認의 可能성이 끊임 아니라 사학 설치자라는 立場 자체가 財產의 利益과 기타 私的 利益을 우선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私學의 自律性이란 學校의 自律性이 그 중심이며 財團의 自律性이 중심이 될 수 없다. 財團의 權限領域은 학교에 투여된 財產이 教育

目的에 반하여 사용되거나 流失되는 것을 막고 財產의 運營管理를 통하여 교육에 이바지하는 데에 한정되며, 直接 學校運營에介入하는 것은 돈(金力)이 교육을 지폐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학생의 부정 입학이나 교직원의 임용에 있어서의 공공연한 금품 수수와 같은 부조리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많은 私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3. 改正法律의 問題點

1) 教職員 任免權과 身分保障

개정안의 제안 이유 중에서 “私立學校 教員의 身分保障을 強化함으로써 教職의 安定을 도모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래 대학의 總·學長에게 있던 教授와 職員의 任免權을 재단측으로 넘겨주고, 教授任期에 관해서는 재단이 정하는 定款에 일임함으로써(교수 재임용제) ‘大學의 人事權’을 대학으로부터 박탈하여 재단으로 귀속시켰다. 대학으로부터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大學의 自律性(현법 제31조 4항)을直接 侵害하는 것으로 違憲이 된다.

이에 대하여 私學財團側에서는 1963년 사립학교법의 제정시에 “교직원 임명 등의 學校運營權이 학교 법인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후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통제·감독 기능만을 강화하여 經營主體인 學校法人的 인사권·재정권 및 규칙 재정권 등 이른바 領域主權을 송두리째 박탈하고 말았으며, 奇想天外의 改惡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世界 最下位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文教部도 “그동안의 運營結果, 설립자의 권한 축소에 따라 學校運營意慾이 低下되고, 學校運營主體로서의 법인이 運營에 責任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조정·통제할 權限이 排除된 不合理性이 있으며, 따라서 법인과 교직원간, 법인과 학생간의 세로운 葛藤이 야기되어 學校發展을 沮害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되고 있는 ‘權利回復’이라든가 ‘不合理性’은 1950년대 이전의 미국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私立大學은

設立者의 私有財產’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教授의 任免權이 법인으로 이전됨으로써 教授의 任用과 免職에 있어서 부당성 내지 부조리에 관하여 교수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차조차 배제되고 말았으며, 그 자체로서 教授의 身分保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教員人事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수들의 의사가 반영된다”고는 하나, 現제의 교원 인사 위원회는 총·학장의 一方的인 任命으로 구성되어 있어 總·學長의 人事權行使을 단순히 追認하는 要式節次로 전락하여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 실정이다. 教授任用에 있어서 그의 학문적 능력에 관한 판단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單科大學이나 學科의 意思가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世界的인 趨勢이며, 교수 임면권의 법인으로의 이전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實質의 審查權은 학교가 가지고 법인은 최종 결정권만을 갖는다고 강변하더라도 그러한 形式的인 任免權을 굳이 가지려고 하는데 대해 人事不條理와 관련된 國民의 懸懼心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事務職員의 任免權에 있어서도同一法人 내의 학교 이외의 機關으로 任意的 轉出이 가능함으로써 職員의 身分保障에도 침해 우려가 있다.

教員 身分保障의 強化라는 주장의 근거는 懲戒節次에 관한 약간의 补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이 ‘懲戒’라는 領域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함부로 징계당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學問의 研究와 教育活動이 보장되도록 學事運營에의 參與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나마도 懲戒節次에 한하여 볼 때, 의미있는 것은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時效制度에 불과하고, 再審이나 法院에 의한 取消나 無效의 決定 또는 判決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 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신분 보장의 強化라 할 수 없다.

懲戒委員會에 관하여 볼 때, 종래 初·中等學校의 懲戒委員會가 재단에 설치되고 교사들의 참

여가 배제되었던 것에 비하여, 大學은 당해 학교의 교수로써 구성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듯이 하면서 대학의 경계위원회를 法人으로 옮기고 교수의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대학 교원의 신분 보장에는 致命的인 改惡을 한 것이다.

懲戒節次에 있어서 중요한 要素는 경계위원회가 어디에 設置되며, 要求權者가 누구이고, 懲戒委員을 어떻게 構成하고 누가任命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인에 경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사장이 마음대로 경계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어떠한 절차적 장치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不當懲戒를 合法化할 위협이 있다.

또한 再審委員會를 일괄적으로 管轄廳(문교부 또는 교육위원회)에 두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문교부는 ‘學校法人的 影響力を 排除하고 獨立의으로 公正한 再審을 할 수 있게 하여 教員의 身分保障을 強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여름 全敎組와 관련하여 이른바 教育虐殺이라 불리는 全國의in 大量懲戒時에 문교부의 指示에 따르지 않는 많은 사립학교에 대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懲戒를 強要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따라서 懲戒委員會에서 否決이 되었더라도 法人이 再審을 청구하여 管轄廳이 정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 단순한 杞憂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조항에는 ‘意思에 반한 休職·免職 등의 禁止’가 규정되어 있고, 勸告辭職의 禁止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에서의 教員의 不逮捕特權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死文化되어 있고 신분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財團關係者の 權限強化

대학 교직원의 任免權 외에 財團關係者の 權限強化規定으로서는 財團理事長의 親姻戚이 總·學長에 就任할 수 있도록 한 것, 理亦 중 親姻戚의 比率制限을 종래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상향시킨 것, 여러 개의 法人理事長을 兼職할 수

있도록 한 것, 學校財產의 貸貸에 관한 許可制를 폐지한 것, 臨時敎員制의 合法化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學校法人을 族閥體制화하고 學校를 私有企業化함으로써 公敎育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設立者的 私的 利益을 보장하는 것이라는批判을 면치 어렵다.

첫째로 “總·學長 適格者가 이사장의 親姻戚이라고 해서 任用을 禁止하는 것은 현법상의 萬人平等의 原則에 위배된다”는 法人協議會의 論旨나 “機會均等의 原則 및 職業選擇의 自由를 제한하여 不當하다”는 것이 일반 輿論이라는 文敎部의 辨明은 일견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平等의 原則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相對的平等을 의미하듯이 國民의敎育을 받을 權利를 보장하기 위한 公敎育의 目的達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職業選擇의 自由도 法律로 制限할 수 있다. 따라서 총·학장의 적격자라 하더라도 이사장의 친인척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大學의敎育과 學問을 위한 牽仕者가 아니라 도리어 財團의 私的 利潤을 위해 일할 危險性이 있기 때문에 任用制限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요청된合理的制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理事 중 親姻戚의 比率限界의 增大에 관하여 “사학 관계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다만 學校設立 有功者가 모두 理事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은敎育과 大學의 公共性에 대한 無關心과 利己心의 표현일 뿐이다. 教職員의 理事就任은 법률로 禁止하면서 學校設立 有功者 ‘모두’가 理事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학을 私有財產이라고 보는 생각과 教職員과 學生을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의 개회 정족수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고 정관 개정 등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文敎部의 辨明은 이사회 스스로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뿐이며 설립자 한 사람에 의해 사실상 이사회가 지배되고 있는 것이 보통인 現實狀況에서는 전혀 無意味한 論理일 뿐 아니라, 도리어 사학 재단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 말이 수긍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설립 유공자의 이사

회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한 私學의 公共性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현행의 3분의 1도 현실 상황에서는 缩小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論論이었다.

셋째로 法人理事長의 兼職許容에 관하여 “작금과 같은 세태에 겸직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議見과 力量이 있는 분을 無益하게 겸직을 制限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얘기는 겸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비난받을 줄 알면서 왜 그렇게 고친 것인지,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식견과 역량이 있는 분이 그들이 아니면 없다는 뜻인지 의문이 생기게 한다. 이는 學校法人的 財團企業化를 통하여 私的 利潤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외에 理由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로 學校財產貨貸에 관한 기존의 許可制를 废止한 데 관하여 “자기 재산을 교육 재단에 희사한 사람이 처벌당하는 違法行爲를 할 리가 萬無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번거로움을 簡素化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 자기 재산을 교육에 희사한 사람은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권한을 제한할 목적으로 權限濫用의 豪慮가 있는 領域에 대해 法의 制裁裝置를 둔 것은 그동안 상당수의 사학들이 ‘學校財閥’ 이런 말이 통용되듯이 학교를 이용하여 엄청난 私的利益을 추구해 왔고 이를 반관으로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各種 利權과 관련하여 富를 축적해 왔었다는 염연한 사실들 때문이었다. 利己의 慾心이 아니라 純粹한 教育精神에서 회사한 재산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教職員과 學生들의 자발적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自主的인 學校經營을 尊重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를 할 리가 만무하다”는 주장은 할 말을 잃게 한다.

다섯째로 臨時教員制度의 合法化는 教員充員을 回避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재정 부담을 회피하게 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教育의 質을 저하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法人的 任員就任은 政府當局의 承認을 받게 되어 있고, 정부 당국은 언제든지 그 承認

取消權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財團의 權限濫用에 대한 豪慮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사항들을 이미 법률로써 보장해 준 상황에서는 이미 그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 도리어 권한 남용을 대학 스스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自治組織을 保障하고, 법인의 임원 취임에 관한 政府當局의 承認을 废止하는 것이 사학의 자주성에 부합될 것이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 재단의 눈 밖에 나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이미 정부 당국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이고, 이번의 개정 법률이 정부 당국과 사학 재단의 [공동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政府와 財團간의 利害關係의 對立이 아닌 한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맷음말

금번 사립학교법의 改正目的과 관련하여 “違憲條項으로 얼룩진 사립학교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無秩序와 混亂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原因을 是正한 것”(법인측)이며, “設立者들의 投資意慾을 鼓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문교부측)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違憲性은 교직원과 학생의 自治權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정부 통제하에 둠으로써 ‘大學의 自律性’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私學財團의 財產權(寄附함으로써 재산권자도 이미 아니다)에 근거한 利益保障이라는 측면에서의 위험성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의 私立大學의 無秩序나 混亂은 주로 재단과 관련된 非理나 權限濫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의 목적인 ‘私學의 健全한 發展’보다는 도리어 混亂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法人的 總·學長任命에 대한 政府의 承認 및 取消權을 废止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법인의 전권을 보장하는 상황에서는 도리어 잘못되는 것에 대한 통제 장치를 없엔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이번 私立學校法의 改正은 ‘私學의 自律性’이란 概念을 ‘法人的 自律性’으로 잘못 解釋하였을 뿐 아니라, 大學의 自律性을 侵害하면서 기존의 大學의 最小限의 自治權까지 法人으로 移轉시켰다는 점에서 ‘私學의 公共性’과 教職員의 身分保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私學財團의 專橫이나 橫暴가 없도록 法適用의 適正을 기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橫暴가 없도록 하는 最善의 方法은 法律로 規定해야 하는 것이며, 법률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行政權을 통하여 規制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私學에 대한 行政監督權의 強化라는 自己矛盾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教育에 관한 基本法인 教育法의 改正도 없이 私立學校法만을 法人側의 要求에 따라 전격적으로 改正한 것에 대하여, 근래 계속 논란되고 있는 政經癱瘓이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現行憲法에 신설된 ‘大學의 自律性 保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下位法律의 改正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教授協議會 등의 自治機構를 구성하고 總·學長을 選出하여 大學民主化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學則의 民主的 改正을 통해 自律性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에 대하여 政府는 여전히 學則承認權을濫

用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세의 흐름은 더 이상 문교 당국에 의해 저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私學財團의 利益追求를 위한 權限強化의 要求와 결합하여 法人을 통한 間接的인 學校支配를 관철하려는 底意가 숨어 있다고 하는 論理는 説得力を 갖는다. 형식적인 評議員會의 설치나 人事委員會, 預算決算諮詢委員會의 설치는 그構成과 權限에 있어서 불 때 無意味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수협의회 등 大學自治機構를 無力化시키려는 意圖로 해석될 뿐이며, 教授의 身分과 權限을 회생시키면서까지 보장되는 ‘私學의 投資意慾’이라는 것도 教育의 목적이라기보다는 私的인 利益이 그目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大學의 人事權과 財政權 및 規則制定權을 골자로 하는 大學自治權을 剥奪하고, 財團만이 定款과 직접적인 權限으로써 大學을 전적으로 支配하도록 하며, 재단과의 蜜月關係 속에서 대학을 政府가 間接支配하도록 한 私立學校法은 改正이 아니라 改惡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私學의 自律性’과 ‘私學의 전진한 發展’을 위해서는 財團과 學校가 긴밀한 協助關係 속에서 國家行政權의 간섭은 받지 아니하고 대학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大學自治制’를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